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4.26.(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탁자 겸 매도자 | 시공사 | 위탁자 |
|--------|---------------------------------|---------------------------|---------------------------------|
| 상호 | 한국자산신탁(주) | (주)포스코이앤씨 | 탕정도시개발(주) |
| 법인등록번호 | 110111-2196304 | 174611-0002979 | 110111-6825496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더타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동로 307 (죽도동)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5층 504호 |

| 구분 | 건축김리 | 전기김리 | 소방김리 | 정보통신김리 |
|----|---------------|-------------|-------------|-------------|
| 상호 | (주)아이티엔건축사사무소 | (주)이지건축 | 국제엔지니어링(주) | 주전아이엔지니어링 |
| 금액 | 3,982,770,000 | 786,487,900 | 777,645,775 | 220,000,000 |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년 5월 7일(화) | 2024년 5월 8일(수) | 2024년 5월 9일(목) | 2024년 5월 16일(목) | 2024년 5월 18일(토) ~ 5월 24일(금) | 2024년 5월 27일(월) ~ 5월 29일(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방문접수 | 방문계약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 | |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 - 18260 (2024.04.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0~35층 9개동 총 1,214세대 중 일반분양 1,0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20세대(기관추천 104세대, 다자녀가구 104세대, 신혼부부 187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생애최초 9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 주택 구분 | 주택 관리 번호 | 주택 형태 (전용면적 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비율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 계 | |
| 민영주택 | 2024 000194 | 01 | 070.8617A | 70A | 70.8617 | 26.3063 | 97.1680 | 49.5318 | 146.6999 | 41.9297 | 484 | 48 | 48 | 87 | 15 | 43 | 241 | 243 |
| | | 02 | 070.8318B | 70B | 70.8318 | 26.6407 | 97.4725 | 49.5109 | 146.9834 | 41.9120 | 133 | 13 | 13 | 24 | 4 | 12 | 66 | 67 |
| | | 03 | 070.9782C | 70C | 70.9782 | 26.8718 | 97.8500 | 49.6133 | 147.4633 | 41.9986 | 51 | 5 | 5 | 9 | 1 | 4 | 24 | 27 |
| | | 04 | 084.8324A | 84A | 84.8324 | 31.2993 | 116.1317 | 59.2972 | 175.4289 | 50.1963 | 164 | 16 | 16 | 29 | 5 | 15 | 81 | 83 |
| | | 05 | 084.7945B | 84B | 84.7945 | 30.8619 | 115.6564 | 59.2708 | 174.9272 | 50.1739 | 109 | 11 | 11 | 19 | 3 | 10 | 54 | 55 |
| | | 06 | 084.9331C | 84C | 84.9331 | 31.8426 | 116.7757 | 59.3676 | 176.1433 | 50.2559 | 109 | 11 | 11 | 19 | 3 | 10 | 54 | 55 |
| 합 계 | | | | | | | | | | | 1,050 | 104 | 104 | 187 | 31 | 94 | 520 | 530 |

| 주택형(타입) | 공급세대수 | 최저 | 최고 |
|---------|-------|-------------|-------------|
| 70A | 484 | 403,000,000 | 411,000,000 |
| 70B | 133 | 404,000,000 | 412,000,000 |
| 70C | 51 | 401,000,000 | 409,000,000 |
| 84A | 164 | 472,300,000 | 482,300,000 |
| 84B | 109 | 480,000,000 | 490,000,000 |
| 84C | 109 | 471,100,000 | 481,100,000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1차 | 2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 계약시 | 24.06.28. | 24.09.20. | 25.02.20. | 25.07.21. |
| 중도금(60%) | | 잔금(30%) | | |
| 4회차 | 5회차 | 6회차 | | |
| 25.12.22. | 26.04.20. | 26.08.20. | 입주지정일 |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구분 | 내 용 | | | | | | |
|---------------|---|----|------|---------------|--|---------------|---|
| 특별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 | | |
| 공통사항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전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전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td> </tr> </tbody> </table> | 구분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전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전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구분 | 처리방법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전은 부적격 처리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전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전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연,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 | |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정기준 ▶ 미성년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추정]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표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87세대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

| 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공급 비율 | 내 용 | |
|--|-----|----------|-------|---|----|
| | | | | 신청자격 | 내용 |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 |
| | 3단계 | 우선공급 |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
| | 4단계 | 일반공급 |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 | |
| | 5단계 | 추첨공급 | 잔여 세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40% 초과하나 (맞벌이인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 | | |

| 구분 | - ②순위 | |
|----------|---|---|
| | 순위 | 내용 |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아산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자녀 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며,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며,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4세대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공급 비율 | 내 용 | |
|----------|--|----------|-------|---|----|
| | | | | 신청자격 | 내용 |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3단계 | 우선공급 |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이하인 분 | |
| | 4단계 | 일반공급 |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신청자격 | 5단계 | 추첨공급 | 잔여 세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며,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아산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2세대

| 구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아산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선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유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구분 | 특설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 충청남도, 세종시] |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 특설시 및 부산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 ②가점 :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 | | |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1순위 | 전용 60㎡ 초과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 가점점수의 선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실시 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